

지지 않는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991년 4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납세자는 평가등급의 재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아래 7 참조).

6. 장애자용 주택에 대한 조정

주택에 장애자용 특수시설이 설치되어 재산 가치가 증가된다 할지라도 평가시에는 그 특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급을 설정한다. 이와 반대로 주택에 장애자용 시설이 설치되어 주택의 가치가 감소된다면 이는 주택의 가치 평가시 반영되게 된다.

7. 이의신청

평가청의 지역사무소(과세권을 행사하는 council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제안(proposal)의 형태를 띄게 되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council tax의 납세의무자
- 2) 주택의 소유자
- 3) 과세권을 행사하는 council

8. 이의신청의 근거

이의신청을 하고자할 때에는 먼저 평가청 지역사무소의 등록 공무원과 접촉해야 한다. 지역사무소의 소재지는 council tax의 고지서에 명기되어 있다. 등록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해준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지위(소유자 또는 임차인)
- 3)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 내용과 수정되어야 할 사항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등록 공무원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청문(hearing)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council tax를 과세한 council에서는 세액을 수정하게